

행정관청 콩나물 수거 검사에 대한 업자에게의 당부말씀

일부 행정관청 위생담당관의 콩나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시설물에 의하여 재배되고 있다하여 제조 또는 가공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업무처리되기 때문. 각 업체의 재배중에 있는 콩나물을 일방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은 적용법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집권남용 내지는 탈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편집실>

콩나물은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116호로 시설작물생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농산물로서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류이며 보건사회부고시제86-1호 「기본식품관리요령」에 의거 채소류(엽채류)로 되어있어 그 소관 부처는 농림수산부 유통국 채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콩나물의 재배 및 유통에 대하여는 명확한 적용법규나 행정제도등을 설정되어 있지않다.

바로 이러한 행정부재에서 오는 공백상태에서 농약콩나물사건 등이 심심치않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정부재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진정 또는 건의를 하였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콩나물에 대한 농약의 허용 기준치 만이라도 설정하여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번번히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콩나물은 뚜렷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채소류로 분류되어 밭에서 재배되는 배추와 무우 등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타채소류에는 인체에 해가 미치지 않는 한 도내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어 그 기준치에 의하여 재배되면 되지만, 콩나물은 그 기준 설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인체에 해가없는 콩나물용 종자콩의 소독약을 개발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로 허가하여 달라는 제약업계의 신청을,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의 적용 「식품」이 아니고 채소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약」으로 등록 되어야 한다하여 농약으로 분류되어 시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일부 업자에 의하여 재배된 콩나물에서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의 미량으로 잔류된 콩나물 종자콩 소독약성분이 검출되었다 하여, 농약콩나물이란 오명을 쓰게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음과 동시에 우리 콩나물 업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콩나물은 먹는다는 개념에서는 식품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농약콩나물 사건을 일시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만을 인용하여 우리 업자가 형사처벌을 당해야 하고 1백억원어치이상의 콩나물을 폐기처분 했어야 하며, 그 충격에 의한 소비의 위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업계의 손실을 생각할때, 무성의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갓쓰고 말탄격인 모순된 행정조치의 뒷맛이 결코 개운치만은 않다.

현재 이사건이 사법부에 소송화 되어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지만, 우리 콩나물 업자들은 예의주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관심거리로 되어있다.

재판부 측도 전술한 제반사항들에 요인함인지 이 사건을 신중히 다루고 있는듯이 보이며, 우리 콩나물 업자들도 공정한 심판으로 실추된 콩나물의 명예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일선행정부서 위생담당관의 콩나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설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 제조, 또는 가공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던 것이기에, 위생업무처리 및 적용기준을 오인하여 각 업체의 콩나물을 일방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그것은 적용법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직권남용 내지는 탈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좌우간 재배중에 있는 콩나물은 현행법의 어떤 법규에도 그 누구도 수거,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우를 범하는 일부 일선행정부서는 더이상 영세한 콩나물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자 개개인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콩나물을 먹음으로서 건강에 해가되게 하는 일은 스스로가 예방하여야 하고 그 의식구조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좌우간 행정당국은 업무 집행과정에 있어 오인된

판단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영세한 콩나물업자를 더 이상 부당하게 괴롭혀서도 아니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영세 콩나물 업계를 지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콩나물 재배 및 유통에 대한 법정장치나 제도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콩나물 재배업자 스스로도 일부 행정관청서 위생담당관의 콩나물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탈법한 행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나 행정체계등을 숙지하여 더이상 애매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1.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11116호로 콩나물은 시설작물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농산물로서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류임.
2. 보건사회부고시 제86-1호 기본식품 관리요령에 콩나물은 채소류(엽채류)로 분류.
3. 콩나물의 소관부처는 농림수산부 유통국 채소과임.
4. 콩나물재배에 필요한 전기료도 농업용(시설재배용)으로 병중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도 농사재배용으로 적용이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도 그 업종이 농업으로 비과세 되고 있음.
5. 콩나물의 재배가 시설물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하여 제조나 가공식품으로 오인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6. 콩나물의 법적처리는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굳이 관련법규를 준용 한다면 농약관리법을 인용할 뿐이고
7. 환경청고시 제86-37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콩나물에 대한 적용은 없으나, 간혹 콩나물에 결부하여 문제화 되고있는 “치오파네이트메틸”과 “캘틴”등은 다른 채소류의 기준치는 5PPM 까지를 허용하고 있음.